

무배당 하나 신탁제공용 이올보증형  
퇴직연금보험 약관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 무배당 하나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퇴직연금보험 약관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제4조【신탁업자의 수행업무】

제5조【보험회사의 수행업무】

제6조【계약의 성립】

제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8조【보험기간】

제9조【보험료의 납입】

제10조【단위보험】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제12조【계약의 해지】

제13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

제14조【해약환급금】

제15조【계약의 승계】

제16조【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제17조【배당금의 지급】

제18조【소멸시효】

제19조【해지시 구비서류】

제20조【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사용자 손실보상】

제21조【약관의 해석】

제2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2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2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25조【약관의 변경】

제2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27조【분쟁의 조정】

제28조【준거법】

제29조【관할법원】

## 제1조【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계약자적립액 운용의 일환으로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제3조【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 제4조【신탁업자의 수행업무】

- ①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본 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신탁업자는 본 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5조【보험회사의 수행업무】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보험료의 수령
2.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의 지급
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6조【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을 통한 전자적 거래시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 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물(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제8조【보험기간】

본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 제9조【보험료의 납입】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 ③ 자유적립식\_이율보증형 단위보험의 경우 이율보증기간의 3분의 2 경과시부터 이율보증기간 종료일까지(이하 ‘납입보험료 제한기간’이라 한다)의 납입 및 이전금액의 한도는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납입보험

료 제한기간 시작일 전일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50%로 합니다.

**【예시】**

- 단위보험설정일이 2020년 4월 15일이고, 이율보증기간이 1년인 경우  
납입보험료 제한기간 :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4월 15일
- 단위보험설정일이 2021년 8월 31일이고, 이율보증기간이 1년인 경우  
납입보험료 제한기간 : 2022년 4월 30일부터 2022년 8월 31일  
(해당월의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해당일로 합니다)

**제10조【단위보험】**

- ① 거치식\_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거치식\_이율보증형을 선택하고 납입되는 보험료 또는 이전되는 단위보험의 계약자적립액으로 설정된 구좌를 말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확정된 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계약자는 각 보험료 납입시 거치식\_이율보증형의 이율보증기간 중에서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은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회사가 공시한 거치식\_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이율보증기간 동안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자유적립식\_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자유적립식\_이율보증형을 선택하고 최초보험료 납입 시 또는 단위보험의 계약자적립액 이전 시 설정된 구좌를 말하며, 단위보험에 확정된 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계약자는 위 보험료 납입시 자유적립식\_이율보증형의 이율보증기간 중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하며, 이율보증기간동안 자유롭게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액은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회사가 공시한 자유적립식\_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납입시점부터 이율보증기간 종료일까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종료시점에 도달한 단위보험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중도해지한 단위보험의 해약환급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자산기관의 관리번호(DC 형의 경우 가입자번호)별로 자유적립식\_이율보증형 단위보험이 이미 설정된 경우 자유적립식\_이율보증형 단위보험은 추가로 설정할 수 없으며, 거치식\_이율보증형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종료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계약자적립액 또는 중도해지한 단위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이미 설정된 자유적립식\_이율보증형 단위보험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단위보험별로 해당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종료일까지 새로운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종료시점에 해당 단위보험의 계약자적립액으로 해당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 및 보험종목의 세목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을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에 회사가 공시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및 보험종목의 세목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로 합니다.
- ⑤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에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계약자적립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이 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각 단위보험에 적용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50%로 합니다. 다만, 약관 제14조(해약환급금)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해당 단위보험의 계약자적립액계산시 적용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제1항의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표금리(「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로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회사손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여 매월 1일 적용하고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공시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제1항의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표금리(「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로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회사손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을 산출

하여 매월 1일 적용하고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공시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1.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2. 거치식\_1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자유적립식\_1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 \text{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A1 : 국고채(1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1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A3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의 평균값

3. 거치식\_2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자유적립식\_2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 \text{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A1 : 국고채(2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2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A3 : 통화안정증권(2년) 수익률의 평균값

4. 거치식\_3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자유적립식\_3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 \text{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A3 : 통화안정증권(2년) 수익률의 평균값

5. 거치식\_5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자유적립식\_5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 \text{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A1 :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5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A3 : 통화안정증권(2년) 수익률의 평균값

(주)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합니다.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합니다.

3.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합니다.

4. 평균값은 산출일로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5번째 영업일로부터 14번째 영업일까지 10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출 평균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보험세목별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는 시점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장지표가 되는 다른 수익률(예, 시가평가기준수익률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공시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⑤ 설정된 단위보험에 적용되는 이율에 대한 최저보증은 없습니다.

⑥ 향후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공시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방식 변경시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도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 ⑦ 회사는 년2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함) 또는 피보험자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 ⑧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을 따릅니다.

### 제12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적립식 이율보증형 단위보험의 경우 일부 해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13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계약자적립액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알리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각 단위보험에 적용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 + 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14조【해약환급금】

- ① 해약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각 단위보험에 적용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50%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6. 신탁업자가 취급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7. 만기일 직전 ±3영업일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 제15조【계약의 승계】

계약자는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 제16조【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회사는 본 보험계약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 제17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18조【소멸시효】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해약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제19조【해지시 구비서류】

제13조(계약의 해지)에 의한 해지시에는 해지청구서(회사양식)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0조【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계약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계약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계약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 제21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제2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2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을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2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의 경우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25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2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은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2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8조【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